

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식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고용관계법령 위반자(위반 사업장)에 정식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8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



1. 건 명 :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식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6. 9. ~ 2026. 6. 23. (15일간)
5.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(2층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신보람(Tel 063-450-05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